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 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권한의위임사무중 상정과 소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분야별	알린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상정다	1	○ 시장의 개설허가	도·소매업진흥법 제6조
	2	○ 시장의 관리자 지정	도·소매업진흥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9조
	3	○ 시설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	도·소매업진흥법 제9조
	4	○ 개업 등의 신고	동법 제10조
	5	○ 지획의 승계 및 사업의 양도양수	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
	6	○ 영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	동법 제12조
	7	○ 과징금 처분	동법 제23조
	8	○ 청문	동법 제24조
	9	○ 보고	동법 제50조 제1항 제2호 (법 제6조) 제3호 (법 제12조)
	10	○ 과태료 부과징수	동법 제58조
	11	○ 고압가스제조허가 (냉동제조업)	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
	12	○ 고압가스 제조 변경허가	동법 제4조
	13	○ 사업개시·재개·휴지·폐지신고	동법 제7조
	14	○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	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
	15	○ 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 및 위해 예방 조치 명령 등	동법 제24조
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 거 법 령
상정곡	16	○ 안전관리자채용·해임 또는 퇴직신고	동법 제15조
	17	○ 허가의 취소 등	동법 제9조
	18	○ 과태료 부과징수	동법 제43조
	19	○ 보고·검사 등	동법 제26조
	20	○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(변경)허가	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제3조
	21	○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(변경)허가	동법 제3조
	22	○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	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
	23	○ 사업개시·재개·휴지·폐지신고	동법 제6조
	24	○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 승계 신고	동법 제7조
	25	○ 공급자의 공급증지 신고 및 위해예 방 조치 명령 등	동법 제32조
	26	○ 안전관리자 채용·해임 퇴직 신고	동법 제14조
	27	○ 공급규정 (변경)승인	동법 제26조
	28	○ 허가의 취소 등	동법 제8조
	29	○ 과태료 부과징수	동법 제48조
	30	○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검사대상기기의 폐기·설치자별 경신고 나. 검사대상기기의 폐기·사용증지 신고	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 행규칙 제45조 제45조 동법 제44조
	31	○ 에너지관리자 채용·해임 퇴직신고	동법 제13조 제2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